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3. 4

내무위원회

1. 심사경위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9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3. 3. 4)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영창)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동일하게 조성됨에 따라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등 11건의 조직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직의 직급명칭을 조정된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외 10건의 조직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직의 직급명칭중
- '부기감'을 '부이사관'으로, '기정'을 '서기관'으로, '기좌'를 '사무관'으로, '기사'를 '주사'로 하고
- '수의관(4급)'을 '수의서기관'으로, '수의관(5급)'을 '수의사무관'으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3786호 '92.12.26)시행됨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등 11건의 조직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4조(단장)①항 조문중 지방시설 부기감을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조례 제4조(소장)①항 조문중 지방농림기정을 지방농업서기관으로
-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제4조(소장) ①항 조문중 지방농림기좌를 지방농업 사무관으로
- 충청북도 가축위생시험소조례 제4조(소장) ①항 조문중 지방수의관을 지방수의 서기관으로
- 제6조(지소) ②항 조문중 지방수의관을 지방수의사무관으로

- 충청북도 내수면 개발시험장 설치조례 제4조(장장) ①항 조문중 지방수산기좌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을 지방수산사무관으로
- 충청북도 도유림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소장) ①항 조문중 지방임업기좌 또는 지방농림기사를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4조(장장, 병원장, 학교장) ①항 조문중 지방임업기정을 지방임업서기관으로
- 충청북도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소장) ①항 조문중 지방기계기사를 지방기계주사로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소장)②항 조문중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을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하고
제5조(지소)②항 조문중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조례 제4조(원장) ①항 조문중 지방농업기정을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전 기술직의 기감, 기정, 기좌, 기사등의 명칭을 앞으로는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등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으로 일원화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하며, 해당 기술직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렬과 의료기술직렬의 신설을 위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 (참석 10, 찬성 10)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